

■ 별첨 1. 정관 변경의 건

* 정관 변경(안) 신규조문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1조 (상호) 당 회사는 <u>주식회사 래몽래인</u> 이라고 부른다. 영문 표기로는 <u>RaemongRaein. Co.,Ltd</u> (약호 <u>RMRI</u>)이라고 부른다.	제1조 (상호) 당 회사는 <u>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</u> 라고 부른다. 영문 표기로는 <u>Artist Studio Inc.</u> (약호 <u>Artist Studio</u>)라고 부른다.	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
제2조 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중략) 37. <u>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</u> 38. <u>프랜차이즈업, 음식업 (추가)</u> 39. <u>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</u>	제2조 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중략) 37. <u>연예기획사업</u> 38. <u>비디오 제작, 복사 및 국내 외 판매 사업</u> 39. <u>영화 및 방송용 장비 임대업</u> 40. <u>영화 및 방송제작시설 임대업</u> 41. <u>방송관련 교육사업</u> 42. <u>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, 유통, 판매업</u> 43. <u>예능, 드라마, 미디어커머스 기획 및 제작</u> 44. <u>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</u> 45. <u>프랜차이즈업, 음식업</u> 46. <u>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</u>	사업목적 추가로 기업 및 주주가치의 제고
제4조 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raemongraein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 신문에 한다.	제4조 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artiststudio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 신문에 한다.	회사 홈페이지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
제15조 (전환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<u>주주 외의 자</u>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개선, 사	제15조 (전환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<u>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</u>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3,0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3,000억 원</u> 을 초과하	전환사채 인수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수인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

<p>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개선, 사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총액이 3,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~④ (현행과 동일)</p>	
<p>제16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<u>주주 외의 자</u>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 개선, 사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,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제16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<u>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</u>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3,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3,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 개선, 사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,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 총액이 3,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~⑤ (현행과 동일)</p>	<p>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</p>
<p>제17조 (교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7조 (교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3,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<p>교환사채 발행한도 확대</p>
<p>제31조 (이사의 수)</p> <p>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31조 (이사의 수)</p> <p>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이사의 수 조정</p>
<p>제40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p> <p>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</p>	<p>제40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p> <p>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<u>그 상한</u></p>	<p>이사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를 구체</p>

<p>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.</p>	<p><u>을 정하되, 위 상한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액수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.</u></p> <p>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<u>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,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•개정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.</u></p>	<p>적으로 마련</p>
<p>[부칙] (신설)</p>	<p>[부칙] 이 정관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정관변경에 따른 부칙개정</p>

■ 별첨 2. 이사 선임의 건

[사내이사 후보자 세부내역]

성명 (생년월일)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김동래 (1967.01.30)	現) ㈜래몽래인 대표이사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-	부	부	없음
김기열 (1966.08.25)	現) ㈜래몽래인 CFO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-	부	부	없음
이태성 (1987.09.14)	現) ㈜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표이사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임원 (대표이사)	부	부	없음
이정재 (1973.03.15)	現) ㈜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사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부	부	없음
정우성 (1973.03.20)	現) ㈜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사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부	부	없음

[사외이사 후보자 세부내역]

성명 (생년월일)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박혜경 (1969.06.24)	現) 앤드크레딧 대표이사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없음	부	부	없음